2024년

(사)디지털금융법포럼 춘계학술대회

금융 AI시대 금융상품·가상자산·마이데이터의 규제 변화

일 시 2024. 4. 18(목). 14:00 ~ 17:30

장 소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1,
센터포인트빌딩 3층)

(사)디지털금융법포럼
Digital Financial Law Forum

2024년 (사)디지털금융법포럼 춘계학술대회
금융 AI시대 금융상품·가상자산·마이데이터의 규제 변화

3세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발제 : 윤민섭 본부장(DAXA 정책본부)
좌장 : 정지열 겸임교수(한양대)
토론 : 오유리 변호사(빗썸코리아)
토론 : 김 단 변호사(코빗 법무팀장)

(사)디지털금융법포럼
Digital Financial Law Forum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윤민섭 정책본부장

목 차

I.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및 시행

II.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내용

III.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과제

[참고자료] IOSCO 정책권고 주요 내용

I.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및 시행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발의

➢ 의원 발의 법률안 총 19개

- 특별법 제정안(1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4), 특금법 개정안(2),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1)

➢ 국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3.4.25)에서 19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및 공포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6월 30일 본회의 통과

- 10가지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정책방안 마련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023년 7월 18일 공포

➢ 2023년 7월 19일 시행(유예규정 없음)

I.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및 시행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구성(5장 22개 조문)

구분	조문	비고
제1장 총칙	§1 (목적)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2 (정의)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시장 등
	§3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해외 ICO 등 역외 행위 규제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법의 우선적용 원칙
	§5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금융위원회 자문기구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6 (예치금의 보호)	예치금 별도예치 등
	§7 (가상자산의 보관)	분리 보관, 실물 보유, Cold Wallet, 외부 위탁
	§8 (보험의 가입 등)	책임 이행 확보
	§9 (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거래 종료 후 15년간 보존
제3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10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가장매매,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11 (가상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손해배상책임
	§12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의무

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및 시행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구성(5장 22개 조문)

구분	조문	비고
제4장 감독 및 처분 등	**§13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사업자에 대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 및 검사**
	§14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법위반혐의자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 감독원 조사
	§15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사업자·임직원에 대해 금융기관 유사 제재조치**
	§16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17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익 또는 회피손실의 2배, 40억원**
	§18 (권한의 위탁)	감독원장에게 위탁
제5장 벌칙	§19 (벌칙)	이익 또는 회피손실의 3~5배 벌금, 5억원
	§20 (몰수·추징)	
	§21 (양벌규정)	
	§22 (과태료)	

I.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및 시행

● 부대의견

① 가상자산 발행 · 유통 과정의 이해상충 해소

② 스테이블 코인(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등 포함) 규율체계 확립

③ 가상자산평가업·자문업·공시업 등 규율체계 마련

④ 통합 시세·공시 시스템 구축 · 운영 방안

⑤ 사고 발생시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한 입증책임 전환규정의 마련

⑥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⑦ 유통량 및 발행량 통일 기준 마련

⑧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내부통제 및 절차 마련

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제도 검토

⑩ 가상자산에 대한 검사권을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시행령 마련

II.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

예치금의 분리보관(법 제6조)

- 가상자산의 매매 및 위탁 등을 위한 금전을 예치금으로 정의하고 분리 의무화
  - 관리기관은 현재 은행 등으로 규정
  - 시행령안은 관리기관은 운영기관에 운영을 맡기고,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 1억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2조제1항1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가능(법 제15조제1항)

가상자산의 보관(법 제7조)

- (이용자 명부)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명부 작성 필요
- (실질보유) 수탁업자에게 수탁하여 간접보유한 경우에도 실질보유로 인정, 단 재위탁은 불허
  - 무형의 자산인 가상자산의 특성상 실물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냅샷 등을 통해 가상자산의 보유현황 등에 대한 실사 필요
- (콜드월렛)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80%이상 콜드월렛에 보관(시행령 70%, 감독규정 80%)

II.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

예치금의 분리보관(법 제6조)

- 가상자산의 매매 및 위탁 등을 위한 금전을 예치금으로 정의하고 분리 의무화
  - 관리기관은 현재 은행 등으로 규정
  - 시행령안은 관리기관은 운영기관에 운영을 맡기고,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 1억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2조제1항1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가능(법 제15조제1항)

가상자산의 보관(법 제7조)

- (이용자 명부)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명부 작성 필요
- (실질보유) 수탁업자에게 수탁하여 간접보유한 경우에도 실질보유로 인정, 단 재위탁은 불허
  - 무형의 자산인 가상자산의 특성상 실물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냅샷 등을 통해 가상자산의 보유현황 등에 대한 실사 필요
- (콜드월렛)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80%이상 콜드월렛에 보관(시행령 70%, 감독규정 80%)

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

●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법 제8조)

➢ 은행연합회의 **'실명계정운영지침' 제3조는 해킹·전산장애 및 기타 법령·약관·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에 관한 준비금으로 최소 30억 ~ 최대 200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전자금융사고 이외에 일반불법행위 등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어 있음

➢ 법 제8조 및 시행령안 제7조는 해킹과 전산장애만을 대상으로 최소 30억원(비원화 거래소는 5억원) 최대 핫월렛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하고 있음

● 거래기록의 보존(제9조)

➢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의 추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등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점 및 기간 :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가 계약이 아닌 거래관계 종료를 시점으로 15년간 보존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은 10년임

➢ 가상자산사업자 해산 또는 파산 등의 경우 기록의 보존 관련해서 별도 규정은 없음

- 법 제13조제2항 "6.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

●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법 제8조)

➢ 은행연합회의 **'실명계정운영지침' 제3조는 해킹·전산장애 및 기타 법령·약관·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에 관한 준비금으로 최소 30억 ~ 최대 200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전자금융사고 이외에 일반불법행위 등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어 있음

➢ 법 제8조 및 시행령안 제7조는 해킹과 전산장애만을 대상으로 최소 30억원(비원화 거래소는 5억원) 최대 핫월렛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하고 있음

● 거래기록의 보존(제9조)

➢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의 추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등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점 및 기간 :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가 계약이 아닌 거래관계 종료를 시점으로 15년간 보존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은 10년임

➢ 가상자산사업자 해산 또는 파산 등의 경우 기록의 보존 관련해서 별도 규정은 없음

- 법 제13조제2항 "6.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

불공정거래행위(법 제10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제1항)

-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로서 즉,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방식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안 제9조에서 규정

➢ 통정 및 가장 매매의 금지(제2항)

- 시세조정 또는 매매성황 오인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익획득의 목적을 요구하지 않음

➢ 시세조정 또는 매매성황 오인시키는 행위를 매매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제3항 및 제4항)

시장감시 의무(법 제12조)

➢ 법 제10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게 시장감시 의무 부여

➢ 이상거래(불공정거래행위) 탐지, 심리 및 통지의무

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

● 가상자산거래소의 감시체계간 비교

구분	FDS	AML	불공정거래 감시
근거법률	고객보호의무를 위한 일반적 선관주의무로 볼 수 있음 * 법적 의무화를 위해 전금법 개정 논의 있음	특금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목적	고객계좌 등에 대한 부정행위 탐지	자금세탁 탐지 및 예방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탐지 및 적출
필요 정보	고객정보, 주문정보, 입출금정보, 접속기기 정보 등	고객정보, 입출금 정보 등	고객정보, 주문정보, 접속정보, 호가등 시장정보, 가상자산별 이슈정보
주된 감시사항	고객 본인의 접속 여부 등	자금 등의 이전 흐름이 정상거래인가 여부	고객의 매매행위가 불공정한 행위인가 또는 목적 여부
행위의무자	대부분의 사업자	특금법 적용대상자	가상자산거래소
보고대상	없음	FIU 보고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
직원 겸직	가능	가능	심리업무의 경우 불가능

III.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과제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 이행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예치금 분리보관, 실질보유, 준비금, 콜드월렛 비중 등은 ISMS 인증, 실명계좌운영지침, 내부통제 등을 통해 기 도입된 부분이 있음
- 반면, 기록보존 의무의 대상 범위 및 기간(15년) 확대, 시장감시 등 새로운 의무 부여로 인해 규제비용 증가
  - 특히, 시장감시는 국내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유일했기 때문에 보완 및 지속적 고도화 필요

법인거래의 활성화(1)

- (현행 규제) 특정금융정보법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대상을 법인이나 개인 등으로 구분하여 제한하지 않으나, 법 시행 이후 은행은 법인에 대해서는 거래소 계정에 연동된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음
- (관련 규제 변화) 법인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변화
  - 23년 국정감사시 교육부 등에서 기부코인이 이슈화 제기
  - 2023년 12월 증선위 결정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 국세청 및 검찰 등에서 압류 및 추징한 가상자산 처분 허용

법인거래의 활성화(2)

- 법인거래는 일반법인 및 기관투자를 포함하는 사항으로 폭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법인거래 허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각 주장별로 그 범위를 달리하기 때문에 관련 논의시 그 범위를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관투자의 경우 기관의 자기자산투자와 타인자산 투자(일명 : 펀드, 일반투자자의 간접투자)로 구분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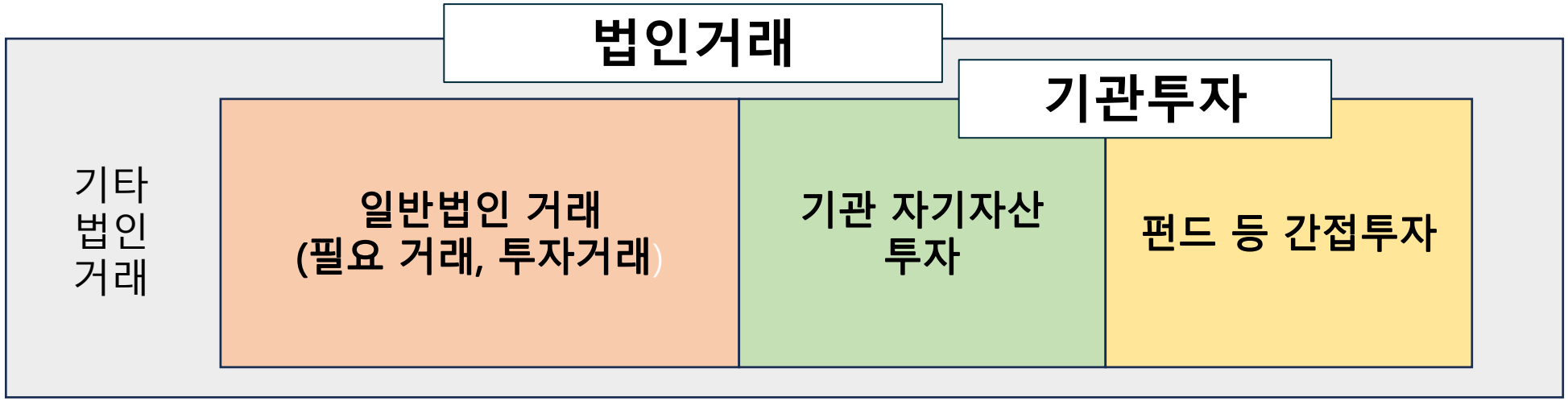

III.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과제

● 2단계 입법 방향

가. 업무별 진입규제 마련

➢ 거래소, 보관업자 등이외에 매매업, 수탁기관, 평가기관, 자문업, 주문전송업 등 가상자산 관련 사업 유형에 따른 진입규제 마련 필요

➢ 세계 각국은 필요성에 따라 사업자 유형을 다르게 분류하고 있으나, EU 미카법은 3개 클래스, 7개 유형으로 분류 중

CASP 유형		필요 자본	기타 요구사항
Class 1	제3자를 대신하여 가상자산 주문실행	€50,000	• 서비스 제공자는 실행된 고객 주문에 대해 최상의 결과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실행조치를 수립하고 구현하여야 함
	가상자산 모집 (placement)	€50,000	• 고객과의 계약체결 전에 거래비용과 수수료, 절차 및 가격 등 규정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함
	제3자를 대신하여 가상자산 주문 접수 및 전송	€50,000	• 고객의 주문을 전송할 때 CASP는 고객 주문을 특정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으로 전달(routing)하기 위한 유인책(보수, 할인 또는 비금전적 혜택)의 수령을 금지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제공	€50,000	• 가상자산 자문업자는 고객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고객의 가상자산 투자지식과 경험을 평가해야 함 • 제공된 자문은 이 평가와 비교하여 투자위험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경고를 포함해야 함
Class 2	제3자를 대신하여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	€125,000	• 가상자산 관리인은 고객의 가상자산을 자신의 주소와 분리된 DLT 주소에 보관하여야 함 • 가상자산 관리인은 각 고객에 대해 보유한 가상자산의 위치에 대해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고객은 해킹이나 오작동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가상자산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Class 3	가상자산 거래플랫폼 운영 (다자간거래시설/ 조직화된 거래시설 (MFT/OFT))	€150,000	• MiCA에 명시된 플랫폼에 대한 운영 규칙을 채택하고, 거래 시스템의 운영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인 절차 및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자신의 계정으로 플랫폼에서 거래금지 • 거래 전후 투명성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수수료 구조가 투명하고 공정하며 차별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함
	법정통화 또는 가상자산간의 교환	€150,000	• 거래소 운영자는 거래플랫폼에서 실행되는 거래에 대한 가격, 가격결정 방법을 공개하고, 접수된 주문과 체결된 거래의 세부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III.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과제

2단계 입법 방향

나. 국제적 정합성 확보

- 두바이 가상자산규제법, 홍콩 가상자산사업자 운영지침, 일본 자금결제법, EU MiCA 등 세계 각국은 각국 거래 및 규제 환경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규제 마련 중
- 가상자산은 국경에 관계없이 24시간 복수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규제차익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정합성이 중요
  1. IOSCO는 2023년 11월 16일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정책권고사항 최종안 채택
     활동과 기능의 수직적 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상충,
  2. 시장조작, 내부자거래, 사기
  3. 국경을 넘는 위험과 규제협력
  4. 보관 및 고객 자산 보호,
  5. 운영 및 기술적 위험
  6. 소매 접근성, 적합성 및 유통

III.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과제

- IOSCO는 증권감독기구의 협의체이므로 향후 IOSCO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규제가 표준화될 것으로 예상됨
- IOSCO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방향성은 전통금융과 유사하지만, 다른 것은 다르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판매행위규제 등은 기존 자본시장에서의 규제체계와 유사하게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가상자산은 다양한 형식 및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규제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 필요
- 자본시장의 다양성이 자율규제에서 비롯된 것과 유사하게 시장의 발전 및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자율규제체계의 성숙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제1장 모든 규제기관에 대한 포괄적 권고사항

● 권고사항 1 – 규제결과에 관한 공통 표준

➢ 규제기관은 가상자산 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CASP)의 규제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을 위해 전통적인 금융 시장에서 요구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일관성이 있는 규제 결과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권고의 배경은 다음과 같은 요인 때문임

(1) 암호화 자산은 규제 대상 금융 상품이거나 대체 금융 상품처럼 작동하고 있음

(2) 투자자는 다른 금융상품 투자 활동을 암호화폐 자산 거래 활동으로 대체하고 있음

● 국내 규제 영향 – 2단계 입법 및 향후 규제 마련시 국제적 정합성 고려

➢ 자금세탁 및 과세 관련해서 각국간 정보교류 등의 체계가 구축되고 있음

➢ 향후 IOSCO를 중심으로 행위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이 표준화 될 것으로 예상

제2장 이해상충 공개 및 거버넌스에 대한 권고

권고사항 2 – 조직 거버넌스

- 규제기관은 CASP가 수행된 다양한 활동과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을 다루는 시스템,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하여 CASP의 활동에 상응하는 효과적인 거버넌스 및 조직적 준비를 갖추도록 요구해야 함
- 이해상충여부 및 관리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특정 CASP 기능을 별도의 이사회 및 관리팀과 함께 별도의 법인체로 분할하는 것 외에도 특정 법인 내에서 별도의 기능으로 운영하는 것이 포함됨
- 즉, 규제 기관은 추가적인 독립성 요구 사항을 부과하거나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음

[참고자료] IOSCO 정책권고 주요 내용

권고사항 2 관련 규제 동향

- 홍콩은 시장감시업무 및 가상자산보관업무를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분리하도록 의무화
  - 시장감시업무의 경우 독립적인 제3자가 수행하고, 가상자산보관은 제3자 또는 별도 법인 설립 의무화
- MiCA는 가상자산사업의 조직 거버넌스에 대해서 규제하기 보다는 이해상충의 문제로 접근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향후 2단계 입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등의 경우 정보차단규제, 업무분할 규제 등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제2장 이해상충 공개 및 거버넌스에 대한 권고

● 권고사항 3 – 역할, 역량 및 거래의 이해상충 공개

➢ 규제기관은 CASP가 항상 수행하는 각 역할과 역량을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함

➢ 중요할 수 있는 CASP의 공개 유형은 다음과 같음

-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는 특정 법인;
- CASP가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 및 활동과 관련 이용 약관, 그리고 고객의 주문(예: 본인 또는 대리인)을 처리 또는 실행할 때, 보관, 이동 시 CASP의 역할 , 또는 클라이언트 자산을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 CASP가 고객을 대신하여 암호 자산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CASP 또는 그 계열사가 시장 형성 활동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CASP가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참여하는 활동, 고객이 거래하는지 여부 CASP 또는 그 계열사와 주로 이루어지며 CASP가 선도 거래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방법

[참고자료] IOSCO 정책권고 주요 내용

권고사항 3 관련 규제 동향

- 권고사항 2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있어서 조직의 개편 등에 대한 규제인 반면, 권고사항 3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하는 업무에 있어, 이용자와 업무간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관한 권고사항임
-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내용 및 역량 등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MiC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 중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에 대해서 이행상충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공시하는 방향으로 규제

제3장 주문 처리 및 거래에 대한 공개

● 권고사항 4 – 고객주문 처리

- ➢ 규제 기관은 CASP가 대리인 역할을 할 때 모든 고객 주문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해야함
- ➢ 규제 기관은 CASP가 관련 시스템, 정책 및 절차를 고객 및 잠재 고객에게 공개하도록 요구
- ➢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예시;
  - 고객에게 주문 실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할 때 실행 서비스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공개합니다(예: 본인 또는 대행사 기준으로 실행).
  - 규제 기관 및 시장 참가자에게 주문 전달 절차와 이러한 절차가 어떻게 공정하게 적용되는지 공개(예: 고객 주문 우선 순위 및 선행 거래 금지에 관한 요구 사항).
  - 고객 주문 전달을 위해 제3자와 체결한 모든 합의사항 공개
  - 고객에게 최상의 실행을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 사항

제3장 주문 처리 및 거래에 대한 공개

● 권고사항 5 – 시장운영 요건

➢ 규제 기관은 시장을 운영하거나 중개자 역할을 하는 CASP(고객을 대신하여 직간접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가 전통금융에서의 규제 결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제 결과를 달성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함

● 권고사항 5 관련 규제 동향

➢ 가상자산거래소의 운영방식에 관한 권고사항으로 기존의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로 하여금 가격, 거래량 등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향후 2단계 입법 등을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공개의무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제4장 가상자산 및 특정 주요 활동에 관한 권장사항

● 권고사항 6 – 거래지원 관련 사항

➢ 규제 기관은 CASP가 시스템,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하여 암호화폐 자산을 시장 거래에 등록/허용하고 거래에서 암호화폐 자산을 제외하는는 표준을 확립하고 유지하며 대중에게 적절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여야 함

➢ 규제기관은 CASP에게 다음을 포함하여 관련 정보를 적절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함

- 암호화 자산과 관련된 위험;
- 수량 및 가격을 포함한 암호화 자산의 거래 내역;
- 조작 또는 보안 실패 사고를 포함한 암호화 자산의 운영 설명;
- 내부자 및 계열사를 위한 토큰 소유권 집중 및 옵션 및/또는 잠금;
- 전송 프로토콜; 그리고
- 하드 포크 및 에어드롭과 같은 이벤트가 발생할 때 CASP의 고객 암호화 자산 처리 및 각각의 권리 및 권한.

제4장 가상자산 및 특정 주요 활동에 관한 권장사항

● 권고사항 7 – 발행시장 이해상충 관리

- ➢ 규제 기관은 암호화폐 자산의 발행, 거래 및 상장과 관련된 이해 상충을 관리하고 완화하기 위해 CASP를 요구해야 함
- ➢ 규제에는 적절한 정보공개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CASP 상장 및/또는 자체 독점 암호화폐 자산 또는 CASP 또는 계열사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암호화폐 자산의 거래를 금지해야 할 수도 있음

● 권고사항 7 관련 규제 동향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제5항은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음

제5장 시장남용행위 관련 권장사항

● 권고사항 8 – 사기 및 시장남용

➢ 규제 기관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기 및 시장 남용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존 규제 체계에서 아직 다루지 않는 범위를 고려해야함

➢ 해당 범위에는 미공개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발행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권고사항 8 관련 규제 동향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에서 미공개 정보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코인 리딩방 등을 통한 사기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전적 예방에 한계 존재

➢ 향후 가상자산 업태규제 등이 마련되는 경우 미등록 자문등에 대해서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제5장 시장남용행위 관련 권장사항

● 권고사항 9 – 시장감시

➢ 암호화 자산 시장에 대해서 전통금융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감시체계가 구축 및 제공되어야 함

➢ 규제기관은 시장감시체계를 구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

- 시장 남용을 방지하고 탐지하기 위한 거래 및 주문 감시의 적시성.
- 플랫폼에서 시장 남용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시정 조치(예 : 거래정지 등) 가능성
- 관련 암호화폐 시장 간 의심되는 시장 남용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 의심스러운 거래 및 주문을 탐지하고 관련 기관에 보고하는 시스템.
- 사이버, 금융 범죄 및 시장 무결성 관점에서 악의적인 행위자를 식별하는 시스템.
- 고객 실사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AML-CTF에 대한 FATF 권장 사항에 따른 요구 사항

[참고자료] IOSCO 정책권고 주요 내용

권고사항 9 관련 규제 동향

- 한국 및 주요 국가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VASP 신고 등을 통해 자금세탁 방지체계의 구축을 시행 및 추진하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의무와 관련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는 거래소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일본	홍콩	기타
협회 표준업무규정에 따라 거래소가 수행	독립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시장감시시스템 채택 의무화 * 홍콩의 해쉬키의 경우 나스닥이 제공하는 시장감시 솔루션을 이용 중	MiCA 및 두바이는 거래소의 업무로 규정 미국은 FINRA에서 이더리움 및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노드를 구축하여 시장감시도구 테스트 중

제5장 시장남용행위 관련 권장사항

● 권고사항 10 – 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 규제 기관은 CASP가 중요 비공개 정보 관리에 관한 시스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해야함

- 미공개중요정보관련 정책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음
- CASP가 중요한 비공개 정보 및 시장에 민감한 정보를 식별하고 분류하는 프로세스
- 중요한 비공개 정보 및 시장에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검토
- CASP 및 개인 목록에 의한 중요한 비공개 정보 및 시장에 민감한 정보의 공유 및 사용에 대한 제한 사항;
- 중요한 비공개 정보 및 시장에 민감한 정보에 관한 CASP 시스템, 정책 및 절차 정책의 위반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
- 내부 고발을 촉진하고 관련 당국에 잠재적인 위반 사항을 보고하는 프로세스

[참고자료] IOSCO 정책권고 주요 내용

권고사항 10 관련 규제 동향

- 한국 및 주요 국가는 미공개중요정보에 대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감시 등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다만, 향후 가상자산 규제의 발전에 따라 미공개정보의 내용 및 미공개기준 등에 대한 사항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발행인 즉, 상장기업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고, 공시시스템에 의하여 공시되기 이전을 미공개정보로 분류하고 있음

제6장 국제 협력에 대한 권고

● 권고사항 11 – 규제협력 강화

➢ 규제 기관은 암호화 자산 발행, 거래 및 기타 활동의 국경 간 특성을 인식하여 그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관할권의 규제 기관 및 관련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함

● 권고사항 11 관련 규제 동향

➢ 주요 국가는 각국의 현황에 맞게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를 마련 중임

➢ IOSCO는 증권감독기관의 국제협의기구로서, 강제성은 없지만, 동 기구의 권고사항은 각국의 규제정책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규제의 표준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한 흐름은 IOSCO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제7장 고객 자금 및 자산관리에 대한 권고

● 권고사항 12 – 커스터디에 대한 권고사항

- ➢ 규제 기관은 고객 자산을 보유하거나 보호하는 CASP를 다루는 기존 프레임워크 또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고려할 때 고객 자산 보호에 관한 IOSCO 권장 사항을 적용해야함
- ➢ IOSCO는 예를 들어 "핫", "콜드", "웜" 지갑에 암호화폐 개인 키를 보관하는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대치나 기준을 규정하지 않음
- ➢ 권고사항은 비수탁형 지갑에는 적용되지 않음

● 권고사항 12 관련 규제 동향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커스터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실질보유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탁받은 자는 수탁 가상자산의 100%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제7장 고객 자금 및 자산관리에 대한 권고

● 권고사항 13 – 고객 자금 및 자산의 분리

- ➢ 규제 기관은 CASP에게 고객 자산을 신탁하거나 CASP의 독점 자산과 분리하도록 요구해야함
- ➢ 규제 기관은 CASP가 고객 자산의 법적 및/또는 수익적 소유권을 갖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조치취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 자산 대여, 재사용 또는 재담보 등 자산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 전체 암호화 자산 보유의 잠재적 손실을 포함하여 이러한 유형의 활동의 위험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며 비기술적인 언어로 고객에게 사전에 공개해야 함

제7장 고객 자금 및 자산관리에 대한 권고

● 권고사항 14 – 수탁과 보관에 대한 약정 공개

➢ 규제기관은 CASP가 명확하고 간결하며 비기술적인 언어로 고객에게 다음 사항을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함

i . 고객 자산을 보관하는 방법과 이러한 자산 및/또는 개인 키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ii. 독립 보관인, 하위 보관인 또는 관련 당사자 보관인의 사용(있는 경우)

iii. 고객 자산이 옴니버스 고객 계좌 내에서 통합되거나 통합되는 정도, 통합되거나 통합된 자산에 대한 개별 고객의 권리, 통합 또는 통합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위험

iv. 크로스체인 브릿지 등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CASP의 고객 자산 처리 또는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그리고

v. 고객 자산 및 개인 키 사용과 관련한 CASP의 의무 및 책임(배상 조건 및 관련 위험 포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

● 권고사항 14 관련 규제 동향

➢ 가상자산의 경우 수탁 및 보관을 통해 스테이킹을 하고, 검증에 참여하여 보상을 받는 구조 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명확하게 규율되지 않고 있음

➢ 즉,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 등에 대해서 그 범위 및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적절한 규제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IOSCO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참고로 MiCA는 가업자의 유형을 3개의 클래스, 7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7장 고객 자금 및 자산관리에 대한 권고

● 권고사항 15 – 고객자산의 조정 및 독립적 검증

➢ 규제 기관은 적절한 독립적 검증절차 따라 고객 자산의 정기적이고 빈번한 조정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정책 및 절차를 CASP에 요구해야함

➢ 관련 규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고객 자산 조정을 위한 프로세스 및 통제를 관리하는 정책 및 절차;
- 오프체인 기록과 온체인 기록을 조정하는 절차;
- 매년 독립 감사인을 통해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함
  - CASP의 클라이언트 자산 환경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 수행
  -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시스템, 프로세스 및 절차를 포함하여 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CASP의 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는 내부 통제 보고서를 발행
  - CASP 정책 및 절차의 적절성에 대해 독립적인 검토

제7장 고객 자금 및 자산관리에 대한 권고

● 권고사항 16 – 고객 자금 및 자산의 보호

➢ 규제 기관은 CASP가 고객 자산의 손실, 도난 또는 접근 불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시스템, 정책 및 절차를 채택 요구

● 권고사항 16 관련 규제 동향

➢ 권고사항 16은 가상자산의 보완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해킹등을 인한 피해를 방지를 위해 콜드월렛 비중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ISMS 등과 같은 정보보안 체계를 신고요건으로 하고 있음

➢ 해킹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현재 실명계정운영지침에서는 30~200억의 준비금 적립 의무 부과되었으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후에는 핫월렛의 5%이상 보험 또는 준비금 적립 필요

제8장 운영 및 기술위험에 대한 권고

● 권고사항 17 – 운영 및 기술적 위험에 대한 관리 및 공개

- ➢ 규제 기관은 CASP가 IOSCO의 권장 사항 및 표준에 따라 운영 및 기술 위험과 탄력성에 관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함
- ➢ 규제기관은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CASP는 해당 위험 및 정책 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비기술적언어로 공개해야함

● 권고사항 16 관련 규제 동향

- ➢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구조 및 가상자산의 기술적 위험 등에 대해서 평가하고, 해당 사항을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 해당 위험에는 가상자산 거래시 손실가능성, 해킹등으로 인한 피해 등의 요소를 포함

제9장 리테일 유통시 권고사항

● 권고사항 18 – 일반 이용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적용 및 정보공개

- ➢ 규제 기관은 CASP가 소매 고객과의 상호 작용 및 거래에 관한 IOSCO 표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요구해야 함
- ➢ 규제 기관은 신규 고객 온보딩과 기존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의 일환으로 정보공개를 포함하여 적절한 시스템, 정책 및 절차를 구현하도록 CASP에 요구해야 함
- ➢ 소매 고객에게 제공되는 특정 암호화 자산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 및/또는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함
- ➢ 마케팅의 경우에도 오해소지가 있으면 안되며 암호화폐 자산 또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주요 사실 및 관련 위험(예: 수익률 또는 유지 메커니즘 포함)과 같이 소매 고객이 구매하는 제품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촉진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참고자료] IOSCO 정책권고 주요 내용

- CASP가 제공하는 암호화 자산 및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기능 및 위험에 대해 제공되어야 하는 명확하고 간결하며 비기술적이며 정확한 공개 외에도 고객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구되는 모든 수수료, 수수료 또는 인센티브도 공개되어야 함

● 권고사항 18 관련 규제 동향

- 권고사항 18은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일반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설명의무, 광고규제, 적합성 원칙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규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최근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마케팅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마련해가고 있음

감사합니다.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3세션 토론문

(사)디지털금융법포럼
Digital Financial Law Forum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에 관한 토론문

윤민섭 본부장님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에 관한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국내외 규제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시행 후 논의가 필요한 과제 등에 관하여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화두를 던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발제 내용 중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1. 법인의 시장 참여에 관하여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4.1.10. 블랙록 등 글로벌자산운용사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이 검토되고 있으며 홍콩은 지난 4 월 15 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를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미국 현물 ETF 가 승인된 다음 날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외에서는 기관투자자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활발한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명시적인 규정 없이 기관투자자와 법인의 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며 ETF 등을 통한 간접거래도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투자자나 법인과 같은 정보거래자들의 가격 발견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개인의 투기나 시세조종 등의 문제에 훨씬 쉽게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 등 사업 영위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가 필수적인 사업자들의 경우 자산은 있으나 매각할 수 없어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정부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 가상자산거래의 원천금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다는 점은 공감하나 기관투자자 및 법인 거래에 관한 원천 금지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이용자보호에 도움이 되는 정책 방향인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 외국환규제에 관하여

비트코인은 2024. 3. 11.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최초로 1 억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장 속에서 김치 프리미엄이 다시 등장하였고 현재 5~10% 사이의 글로벌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이용자들은 가상자산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화 송금 제한으로 인하여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가 어렵고, 해외 이용자들도 국내 거래소 가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가격차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시장은 국가별로 시장이 구분되는 것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 시장과 직접 연계되어 폐쇄적인 시장구조로 인한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지급수단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는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한 채권발생거래가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으로 인한 대금 거래 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암호자산과 관련한 외환거래를 자본거래로서 규제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기성 거래를 줄이고 양질의 거래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환규제에 관한 고민 및 논의도 계속되길 희망합니다.

3. 나가는 말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디지털융법포럼과 좋은 발표해주신 윤민섭 본부장님 덕분에 시장의 현안에 관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좋은 포럼을 개최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